

결 정

2018 - 106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4. 서울경제 발행인 이 중 환
5.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중 면
6.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이데일리 2018년 2월 1일자 17면 「식품박물관/카스」 특집 면, **한국경제** 2월 1일자 B6~B7면 「유망 분양현장」, 2월 5일자 T11 「호텔의 향기/롯데 아라이리조트」, 2월 7일자 B7면 「주목! 이 상품」, 2월 14일자 B7면 「자산운용사 추천 상품」, 2월 21일자 B6~B7면 「코스메슈티컬/제약 바이오」, 2월 26일자 T10면 「명품의 향기/옴프파탈 끝판왕, 로저드뷔」 특집 면, **아시아경제** 2월 6일자 16~17면 「명절연휴 든든한 건강지킴이」 특집 면, **서울경제** 2월 8일자 28~29면 「수입차 신차전쟁」, 2월 23일자 A30~A31면 「활기 띠는 분양시장」, 2월 26일자 A30~A31면 「다가온 봄, 건강 챙기기」, 2월 27일자 30~31면 「혁신성장 선봉에 선 공기업」, 2월 28일자 A28~A29면 「2018 히트예감 상품」 특집 면, **머니투데이** 2월 23일자 17면 「봄맞이 인테리어」·22면 「올 봄 주목받는 상품」 특집 면, **매일경제** 2월 26일자 B8면 「여행+/설악에서 제주까지 가족여행 떠나요/일성리조트」·B9면 「여행+/부산 출발 ‘낭만 크루즈’ 여행/코스타크루즈 네오로만티카호」 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특집면 기사들은 특정 브랜드나 패션, 여행상품, 크루즈, 인테리어, 수입차, 분양시장, 명품, 리조트, 제약 제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3월 14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박 재 현	박재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⑦(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